

강의전담교원에 관한 규정

전문제정 2021.06.14., 개정 2022.04.04. 개정 2023.09.21. 개정 2024.08.08. 개정 2026.02.09.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해전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강의전담교원의 자격과 임용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정의) 강의전담교원이라 함은 계약제에 의해 임용되는 교원으로 강의 및 별도로 정하는 업무,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업무를 전담하는 비정년 전임교원을 말한다.<개정 2023.09.21.>

제3조 (자격) 강의전담교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「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 기준을 갖춘 자
2. 교육공무원법상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3. 기타 본교 교육 및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
제4조 (교원의 직명) 강의전담교원의 직급은 강의전담 조교수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, 연구 및 산업체 경력연수에 따라 상위 직급을 부여할 수 있다.

제5조 (채용공고) 강의전담교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, 전임교원의 임용절차를 준용한다.

다만,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.

1. 공채가 불가능한 교과목이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
2. 학기 중 강의를 계속 할 수 없는 자가 발생한 경우
3. 산업체 경력(교육기관 포함) 10년 이상인 자인 경우

제6조 (제출서류)

① 강의전담교원의 신규임용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임용지원서 1부.
2. 학사, 석사, 박사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(해당자) 각 1부.
3. 경력(재직)증명서 각 1부.
4. 자격증 및 수상경력 증명서(해당자) 각 1부.
5. 연구실적물 1부.
6. 자기소개서 1부.
7. 학과 또는 대학발전계획서 1부.
8. 기타 임용에 필요한 서류

② 모든 제출서류는 지원자 본인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평가 시 불이익에 관한 귀책사유는 본인에게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
제7조 (임용)

- ① 총장은 최종합격자를 교원인사위원회 임용동의를 거쳐 재단 이사장에게 임용을 제청하며, 임용예정자 중 학기 시작일 전까지 임용포기 또는 임용취소사유가 발생 시 차순위자 중 적격자가 있을 경우 최종합격자로 추천할 수 있다.
- ② 임용예정자 중 학력, 경력 등 임용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해당자를 불합격 처리한다.

제8조 (임용기간 및 재임용)

- ① 강의전담교원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되, 업적평가를 통해 재임용 할 수 있다. 업적평가는 [별표 1] 의 평가기준을 따른다. 단,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전담교원의 임용 기간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사업단 규정 및 지침을 따른다.<개정 2023.09.21., 2026.02.09.>
- ② 재계약 대상자는 재임용대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기한 내에 미체출자는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심사 없이 당연 퇴직으로 처리한다.
- ③ 재임용은 업적평가 결과 총점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.
- ④ 강의전담교원은 재임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.
- ⑤ 업적평가는 임용일 기준 1년 단위로 실시한다.<조항신설 2024.08.08.>

제9조 (승진)

- ① 강의전담교원의 승진은 교원인사규정 제28조 승진임용 심사기준에 따르되, 연구실적은 제외한다.
- ② 승진소요연수는 교원인사규정 제31조 직급별 승진소요연수를 따른다.

제10조 (보수 및 책임시수)

- ① 강의전담교원의 보수는 연봉계약제로 하되, 지급금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② 교원의 책임시수는 주당 12시간으로 한다. 단,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책임시수를 조정할 수 있다.
- ③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전담교원의 보수 및 책임 시수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사업단 규정을 따른다. <신설 2023.09.21>

제11조 (복무 및 처우)

- ① 교육관계 법령 및 본교 제규정이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하며, 교육자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.
- ② 계약기간 중 법령 또는 본 대학의 제 규정에서 정한 면직사유가 발생되거나 계약 내용을 위배하였을 경우에는 임면권자가 직권면직 할 수 있다.
- ③ 강의전담교원은 사전승인 없이 타 기관에 정규 출강하거나 겸직할 수 없다.
- ④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 복무규정 및 계약서에 명시한 내용을 따른다.

제12조 (퇴직금) 강의전담교원은 임용기간 중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가입하고,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처리한다.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13조 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총장이 정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06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04월 0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09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08월 0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6.02.09.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년 02월 09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<개정 2022.04.04.>

강의전담교원 업적평가 기준

구분	평가항목	세부평가항목	배점	확인부서
강의 평가 (25)	강의평가 평균점수	· 90점 이상	25	교무팀
		· 80점 이상 ~ 90점 미만	15	
		· 70점 이상 ~ 80점 미만	5	
		· 70점 미만	-	
수업 결손 (10)	수업결손	· 수업결손 1주 이상(주단위별 2점 감점)	10	교무팀
학과 평가 (5)	품위 및 태도	· 소속 학과 조직평가 점수	5	소속학과
법령 준수 및 품위 유지 (30)	교육 및 기타법령준수	· 본교 제규정 위반 등 형사상의 물의 (회당 5점 감점)	30	교무팀
	학내활동	· 학내행사 및 교육 무단 불참 (회당 1점 감점)		교무팀
	품위유지	· 성희롱 물의(회당 5점 감점) · 대내외 음해성 투서(회당 2점 감점)		교무팀
정성평가(30)		학교 및 학과발전 기여도(총장평가)	20	
		학교 및 학과발전 기여도(교무처장평가)	10	
합 계			100	

※ 총점 100점 만점에 70점미만의 경우 재임용에서 제외한다.